

「2026년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우수기업」 포상 공고

지역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2026년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우수기업’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포상개요

○ 목 적

-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 격려하고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함
- (훈격 및 규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표창 2점

구분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우수기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점)	2

- 포상시기 : ‘26. 12. 10(목) (성과보고회 행사 시 시상 예정)

※ 일정은 변동 될 수있으며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포상대상 : 2026년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사업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27.(화) ~ 11. 11.(수) 18:00

- 신청서류 : 해당부문 [붙임] 참조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신청서류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추천서류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한글파일을 PDF 또는 JPG 파일로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관하고, 필요 시 진흥원에서

○ 제출처 : ky@jif.re.kr

3 포상대상 추천

○ 추천방법

- BI 센터장은 신청서류 및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특화 역량 BI 지원사업 참여 우수기업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
- 진흥원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표상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추천

■ 포상 신청자(기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등에 따른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포상 제한 : 중기부 장관 표창 ·전북중기청장 표창 수영일로부터 포상 추천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추천 제한(다만, 시상 및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추진일정

○ 향후 일정(안)

공고	접수	선정심사	최종심의 및 확정	시상식
진흥원 10. 27.(화)	→ 진흥원 10. 27.(화) ~ 11. 11.(수)	→ 표상추천위원회 ~11. 18.(수)	→ 공적심사위원회 (지방중기청) ~11. 25.(수)	→ 진흥원 12. 10.(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일자리팀 063-210-6584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 (추천제한) >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 (중기부 장관 표창, 전북중기청장 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정부포상 업무지침(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2.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기준 확인 후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